

채권 재양도 예정 통지서

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의 권리를 2026년 02월 02일자로 (주)한국투자저축은행에 재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(주)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(주)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(주)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비케이자산관리대부(주)(www.bkasset.co.kr)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양도예정채권 명세
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5.09.30)

No	성명	양수회사	원채권사	생년	성별	최초대출원금	원금잔액	기타비용	소멸시효 완성여부	장래이자 면제여부
1	이*인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92	여	20,000,000	18,837,246	-	N	N
2	김*정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83	여	40,000,000	19,625,999	-	N	N
3	조*주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82	여	16,900,000	16,526,646	-	N	N
4	전*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1	남	5,000,000	4,613,918	-	N	N
5	전*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1	남	5,000,000	4,201,938	-	N	N
6	전*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1	남	6,000,000	5,776,274	-	N	N
7	전*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1	남	10,000,000	9,730,081	-	N	N
8	전*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1	남	5,000,000	4,556,035	-	N	N
9	정*모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8	남	5,000,000	426,230	-	N	Y
10	신*조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5	여	9,000,000	7,231,452	-	N	N
11	신*조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5	여	20,000,000	16,811,948	-	N	N
12	신*조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5	여	16,000,000	13,741,083	-	N	N
13	신*조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5	여	3,000,000	2,534,112	-	N	N
14	김*완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4	남	15,000,000	14,431,180	-	N	N

- 상기 채권 14건 외 8건 별첨 참고

-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-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·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02-6092-00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[별첨]
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5.08.31)

No	성명	양수회사	원채권사	생년	성별	최초대출원금	원금잔액	기타비용	소멸시효 완성여부	장래이자 면제여부
1	박*호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88	남	10,000,000	9,704,554	-	N	N
2	박*민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81	남	10,000,000	7,126,187	-	N	N
3	민*식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80	남	8,000,000	6,987,994	-	N	N
4	조*영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9	남	15,000,000	14,248,207	-	N	N
5	조*제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9	남	7,000,000	6,827,978	-	N	N
6	조*제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9	남	22,000,000	21,646,174	-	N	N
7	조*운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72	남	31,300,000	30,602,924	-	N	N
8	김*환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(주)한국투자저축은행	1966	남	8,000,000	6,479,524	-	N	N